제95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(강화) ㅇ 신탁·랩 장단기 미스매치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 등 의무화 ㅇ ISA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은 30% 이내,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%는 이내로 배분 ▶금융투자업규정 제4-77,제4-93 2.공시·보고 의무 강화(강화) ㅇ 투자일임형 ISA의 MP 공시 및 금감원 보고 의무를 규율 - 상품성신탁의 경우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해 비교·설명*토록 하고, 금투협 홈페이지에 평균 보수율 공시 * 예) 고객에게 “1회성 수수료 선취” 또는 “주기적 신탁보수 수취”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,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(예 : 3, 6, 12개월) 비용 차이를 비교·설명 ▶금융투자업규정 제4-78의3,제4-78의4제4-8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안전요원 배치 의무(신설) ㅇ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 및 요건(개정안 제58조제2항제4호 신설) – (시설) 승차 구매 가능 시설, 국토부령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 – (요건)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안전원 배치 요청 ▶도로법 시행령 제58조	1.비중요
3	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실손의료보험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(신설) ㅇ (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시 요건)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*을 규정개정 * 1)전송대상 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, 2)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시행, 3)요양기관과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·인증 등 통해 확인 가능한 방법 활용 ㅇ (전송대행기관의 법령 준수) 전송대행기관*이 「개인정보보호법」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개정 *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, 금융위원회는 ‘보험개발원’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·발표(’24.2.15.) – 보험계약자가 요양기관을 통한 관련 서류 전송을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, 전송대행기관이 해당 보험계약자의 본인여부 확인 방법*을 구체적으로 명시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* 1)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, 2)전자서명 또는 인증서, 3)생체인식정보를 통한 확인 ㅇ (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시 준수사항) 보험사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입수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준수사항*을 규율개정안 * 동 개정안 제4-46조 각 호의 요건(암호화 등의 보호조치) 충족 및 제4-47조(개인정보 보호 등) 준수 ▶보험업감독규정 제4-50,제4-46제4-47	
4	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 ㅇ 정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상용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,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- ① 정규직 전담 인력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- ② 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 - ③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실적이 있을 것 ▶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.표준화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정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,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-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-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,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- ③ 표준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- ④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·컨설팅·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▶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.창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요건(신설) ㅇ 양자기술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기업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,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- ①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- ②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▶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요건(신설) ㅇ 정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연구센터를 지정할 경우,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– ① 양자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있을 것 – ② 20인 이상의 박사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– ③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– ④ 논문, 특허 등 연구성과가 있을 것 – ⑤ 인접 기술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이 용이할 것 ▶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	
5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(신설) ㅇ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를 700세대로 규정 ㅇ 구성원의 교육과 관련하여, 교육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· 기간 · 장소 · 내용 · 대상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, –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, 층간소음 분쟁해결지원기관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 미이수자의 명단을 소속 위원회에 통보하며,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교육 수강비용은 제23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*으로 부담(시행령 제21조의3) *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,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(제23조 제8항) ▶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	
6	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환경부)	1.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세부절차(신설) ○ 물순환 제품·설비 품질인증제도의 대상, 신청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신설 ▶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.물순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해제기준(신설) ○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을 신설하고,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 규정 ▶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	1.비중요 2.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7</td><td>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
(식품의약품안전처)</td><td>1.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 및 지정·변경 절차(신설)
– 교육기관의 위탁 기준, 지정 신청 및 변경 신청 시 관련 서류 등
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①위탁 기준</td><td>시설·장비</td><td>• 교육 필요 시설(강의실 회장실 기자재 등) 및 장비(스크린 음향시설 등)</td></tr><tr><td>인력</td><td>• 교육관리자 1명 이상 상주
• 강사 요건
- 박사 학위자·기술사 중 관련 업무 2년 이상 (旣종사자)
- 석사 학위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
- 학사 학위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
- 대학 이상 교육기관 강의 경력 10학기 이상인 자
- 10년 이상 건강기능식품등 위생 업무 담당 경력자
- 그 밖의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자</td></tr><tr><td>교육과정</td><td>• 건강기능식품 법령·제도, 기준·규격 등 교육과목·내용 편성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②신청시 제출 서류</td><td>△신규신청서, △기관현황 및 조직 구성, △재정계획, △운영계획,
△교육시행규정, △연간 수요 경제성 분석, △교육시설 현황, △그 밖의 운영사항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③변경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</td><td>• (변경 신청 대상) 기관장, 기관명, 기관 소재지,
• (제출 서류) △변경신청서, △ 지정서 원본, △변경 근거 서류
• (신청 기한)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</td></tr></table>▶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,제3조제6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(질병관리청)	1.중앙 및 지역 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,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(신설) ㅇ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-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마련 - 센터장, 부센터장 각1명을 두고 사업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- 센터장과 부센터장, 팀장의 자격기준 규정 - 지역손상관리센터와 반기별 회의 개최 규정 - 질병관리청장에 보고 의무, 운영규정 및 기록·서류 구비 규정 ㅇ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 신청서를 제출 ㅇ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,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함 ㅇ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별표 1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ㅇ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도록 규정 ㅇ 시·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,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함 ▶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,제7조	1.비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중앙 및 지역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(신설) ㅇ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,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–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– 시행규칙 별표 1(중앙손상관리센터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(지역손상관리센터)로 정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–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– 시행령에서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(중앙손상관리센터) –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ㅇ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가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위탁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손상관리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▶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,제8조	
9	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(경찰청)	1.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시 의무 등록 대상(신설)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는 차량의 범위에 ‘어린이통학버스’ 추가 ▶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	1.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 교통안전교육(신설) ㅇ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방법, 시간, 내용 신설 - (교육방법 및 시간) 강의·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- (교육내용) ▵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운전자의 준수사항, ▵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, ▵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▶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	